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2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농촌진흥법에 명시된 농업인단체를 포함시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110조 등 법규와 적합토록 하며 제1차 조직개편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

4. 주요 골자

- 농촌진흥법에 적합토록하여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를 관련단체에 포함시킴.
- 기금의 예치관리를 도금고로 일원화
-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 심의 의결토록 개정
- 제1차 조직개편으로 구성된 기구 및 직위를 새로운 조직에 맞도록 함

5. 검토 의견

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조례의 공통적 내용을 규정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인연합회를 관련단체에 포함시키며 기금의 예치관리를 도 금고로 일원화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안 제14조 제3항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은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